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일자 : 2010. 3.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 1. 제안이유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과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2. 개정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3. 주요내용

###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변경(안 제4조의2)

중·고등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4:00에서 05:00부터 22:00로,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에서 05:00부터 20:00로 변경함

##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나. 협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다. 입법예고 결과

1) 예고기간 : 2009. 12.28 ~ 2010.1.18

2) 제출의견 : (사)한국학원총연합회인천광역시지회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붙임 1] 참조

라. 규제심사 결과

1) 심사일 : 2010. 2.11. 11:00

2)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마. 법제심사 결과

1) 심사일 : 2010. 2. 24. 13:30

2)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바. 타시·도 조례개정 추진현황 : [붙임 2] 참조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영"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와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의2 중 "법"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30제곱미터이상"을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85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1인"을 "1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60제곱미터이상"을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0.8인"을 "0.8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5"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소방 관계법령」"을 "소방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

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을 "제2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관계법령」"을 "소방 관계 법령"으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먹는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69조의 규정"을 "제88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하고, "관할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20:00까지 한다.

제5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17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교육감"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 (제2조의2 제5호 관련)

---

### 1. 채광(자연조명)

- 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조명(인공조명)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환기

####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4.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및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 및 <u>같은 법 시행령</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학원시설)</b>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u>각호</u>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p> <p>2.~ 5. (생략)</p> <p>6. <u>기타</u>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p> <p>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u>각호</u>의 시설을 둘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체육시설·오락시설 <u>기타</u> 편의시설</p> <p>7. (생략)</p>	<p><b>제2조(학원시설)</b> ① ----- ----- ----- <u>각 호</u> -----</p> <p>1. 강의실 또는 열람실(「<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 -----</p> <p>2.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p> <p>② ----- ----- <u>각 호</u>의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그 밖의</u> 편의시설</p> <p>7. (현행과 같음)</p>
<p><b>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b> <u>법</u> 제8조 제1항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p>	<p><b>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b>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u>각 호</u>와 같다.</p> <p>1. -----<u>30제곱미터</u> <u>이상</u>----- (-----</p>





현행	개정안
<p><b>제2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① (생략)</b>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이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u>1인 이상</u>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u>1인 이상</u>으로 한다.</p>	<p><b>제2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① (현행)</b>            ② -----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b>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b>            4. 숙박시설에는 <b>소방 관계 법령</b>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            -----            ----- 「<b>먹는물관리법</b>」에 따른 -----            -----            6. ----- 「식품위생법」 <b>제88조에</b> 해당되는-----            -----            7. -----  <b>1명</b> ----- . -----            ----- <b>1명 이상</b> -----</p>
<p><b>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 교육감은 제2조의4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b>            ② ~ ④ (생략)</p>	<p><b>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b>            -----            -----            ----- . 이 경우 <b>관할 지역의</b>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b>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차별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⑤ (생략)</p>	<p><b>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b>            -----            -----            다음 각 호의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b>-그 밖의</b> -----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b>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b>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습·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            (이하 생략)</p>	<p><b>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b>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            -----            -----            ----- (이하 현행과 같음)</p>
<p><b>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b>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u>22:00까지</u> 한다.</p> <p>② (생략)</p>	<p><b>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b> -----            -----  <b>05:00부터 22:00까지</b>로 한다. -----            -----            ----- <b>20:00까지</b>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b>제5조(행정처분)</b>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u>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이 따로 정한다.</p> <p>1. ~ 3. (생략)</p>	<p><b>제5조(행정처분)</b>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u>교육감이</u> 따로 정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표 6]</p> <p><b>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b> (제2조의2 제5호 관련)</p> <hr/> <p><b>1. 환기</b>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p> <p><b>2. 채광(자연조명)</b> 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3. 조도(인공조명)</b>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4. 실내온도 및 습도</b>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별표 6]</p> <p><b>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b> (제2조의2 제5호 관련)</p> <hr/> <p><b>1. 채광(자연조명)</b> 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2. 조명(인공조명)</b>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3. 환기</b>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p> <p><b>4. 실내온도 및 습도</b>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p>